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12. .
국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4월 8일, 성일중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4월 9일

다. 상정일자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방위원회(2025.9.2.)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25.11.25.) 상정, 축조심사, 의결(원안
가결)

제8차 국방위원회(2025.11.27.)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성일종 의원)

현행법은 2001년 9월 1일 이후 2011년 3월 28일 이전에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에 대하여 그 유족으로부터 진급신청을 받아 이들을 진급시킬 수 있도록 「군인사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진급신청 기간이 법 시행일인 2019년 7월 24일부터 1년 이내로 한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진급신청 기간은 이미 만료되었으나, 진급신청 대상자 확인에서 누락이 발생하여 일부 유가족은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안내를 받지 못하여 기간 내에 진급신청을 하지 못한 상황임.

이에 진급신청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유가족이 이 법에 따라 진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현행법 제정 당시 2001년 9월 1일 이후 2011년 3월 29일 이전에 사망하여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구분된 사람의 유족은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20년 7월 23일까지 진급신청을 하여야 했음.

다만, 진급신청 대상자 확인에서 누락이 발생하여 일부 유가족은 대상

자에 해당함에도 안내를 받지 못하여 기간 내에 진급신청을 하지 못한
상황으로, 개정안은 진급신청 대상자 확인 과정에서 누락된 순직자 유가
족의 신청 여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진급신청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
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 전사·순직자에 대한 명예를 지키고, 국방부의
행정적 미비로 인해 진급신청 기회를 상실한 유족에 대한 형평성을 회
복하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부승찬)

전사·순직자 유가족의 신청여건 보장 차원 및 전사·순직자에 대한 명
예를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원안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부대의견

없음

9.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10. 비용추계서

없음

11. 관련위원회 의견 요지

없음

12.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없음

※첨부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

법률 제 호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를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진급신청의 기간) 진급신청 은 <u>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u> <u>에</u> 하여야 한다.	제7조(진급신청의 기간) ----- ----- <u>2026년 12월 31일까지</u> ----- -----.